

광주지방법원 2024. 7. 10 선고 2024가단50694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대륜

담당변호사 심가현

변 론 종 결 2024. 6. 5.

판 결 선 고 2024. 7. 10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(D생) 사이에 체결된 2022. 4. 22.자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31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피보전채권

1) 소외 (주)E은 F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여신거래를 지속해오던 중 원리금 납입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C는 위 대출채무를 근보증하였다.

2) 위 대출채권은 G 주식회사, H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고, 채무자에게 각 양도통지가 마쳐졌다.

3) 2024. 1. 10.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다음과 같이 849,778,641원이다.

순번	계정과목	최초대출일	현대출원금	지연손해금	현원리금	보증금액
1	일반시설자금대출-기타<일시>	2012-11-07	686,243,582	163,535,059	849,778,641	324,000,000

나. C의 모친인 망 I(이하 ‘망인’이라고 한다)이 2022. 4. 22. 사망하였고,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C, J, K, 피고가 있다.

다. 위 공동상속인들은 2022. 9. 6. 망인 소유인 의왕시 L아파트 M호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를 피고가 단독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고 한다)를 하였고, 2022. 9. 7.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라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C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,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 C가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,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구체적 판단

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‘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),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, C는 2022. 7. 5.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2느단100297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같은 해 8. 12. 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,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, C는 위 상속포기 수리심판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 할 것이고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당사자도 될 수 없다.

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김혜선